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가단507601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류성용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변 론 종 결 2020. 11. 11.

판 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5,578,7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6.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망 E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6. 체결한 증여계약을

81,126,4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81,126,4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망 E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2. 6. 체결한 증여계약을 ‘71,157,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6.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보충) 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4.경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이 F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 한다)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망인,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가입금액 71,322,720원, 보험기간 2018. 12. 4.부터 2029. 1. 2.까지로 정하여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제회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공제회는 망인에게 74,7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2. 11.경 위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9. 3. 2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공제회에게 71,157,5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망인은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망인은 2018. 12. 1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인 G이 상속을 포기하여 직계존속인 피고 B, C가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 B C는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9. 12. 1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한편, 망인과 피고 D은 2015. 9. 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마. 주식회사 H은 2016.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4,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7. 2. 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2018. 10. 24. 마쳤으며, 이후 2018. 11. 28.자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 D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2018. 11. 29.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망인은 2018. 12. 6.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인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1,157,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 B,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5,578,790원(= 71,157,580원 × 1/2)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6. 2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변경(보충) 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6.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채무자를 위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직후 망인은 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과 위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일련의 연속적인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고려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위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므로, 망인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에 따라 그 만큼의 망인의 재산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감소하게 되므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피고 D의 선의 여부

피고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증여계약이 망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지분을 피고 D에게 증여하는 것은 망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이로써 망인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점은 피고 D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액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구상금 원금인 71,157,58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3.부터 2019. 6.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보충) 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구상금 원금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채권액은 81,126,448원[= 원금 71,157,580원 + 2019. 3. 23.부터 2019. 6. 22.까지의 지연손해금 1,073,196원(= $71,157,580\text{원} \times 0.06 \times 92/366$) + 2019. 6. 23.부터 변론종결일 2020. 11. 11.까지의 지연손해금 8,895,672원(= $71,157,580\text{원} \times 0.09 \times (1 + 142/365)$)]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81,126,4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81,126,4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라.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을 81,126,4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81,126,4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주

별지

1동의건물의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동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10층 호 80.135㎡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 57801.1㎡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57801.1분의 26.3957

(위 부동산 중 지분 2분의 1)

1) 망인이 이 사건 지분을 피고 D에게 이전하기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D으로 변경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약 160,078,285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550,000,000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29,843,429원) × 1/2지분]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81,126,448원인 점, 원고 스스로도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이 타당하다.